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조문별 개정이유서

2024. 3.

금 융 위 원 회

1. 사모 단독펀드 설정 금지 규정 합리화 (안 제6조)

가. 개정 이유

- ‘집합투자’는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나, 형식상 단독 투자자이지만 실질이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집합투자로 보도록 예외를 인정*

* (法§6⑥)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, 상호금융 중앙회, 체신관서, 보험회사의 투자신탁 등 (令§6⑥) 경찰·군인·교직원 등, 운용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 10만명 이상 공제회·조합

- 이외의 단독펀드는 설정이 금지되며, 의무해지 대상(法§192②5.)

나. 개정 내용

-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수익자가 1인의 단독 사모펀드 설정을 기허용한 경우 등*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명확화

*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,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유권해석 법제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일반사모펀드 이해관계인 범위 합리화 (안 제4조)

가. 개정 이유

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이해관계인*과의 거래가 금지되며,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**(法 §84)

* 임직원·대주주·계열회사, 전체 펀드의 30% 이상 판매·수탁한 판매사·수탁사 등

**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전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,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, 펀드에 유리한 거래, 그밖에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금융위의 확인을 받은 거래 등

-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대상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* 해당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되며 추가투자(증권취득·자금대여 등)가 불가하여 운용목적 달성 곤란

* 다른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%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,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(공정거래법 시행령 §4)

※ 한편,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이해관계인 범위에서 투자대상기업을 제외 (승 §271의22①3.)하고 있어 동일한 경영참여 목적임에도 규제차익 발생

- 금융위는 운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 금융위의 확인을 받아 추가투자가 가능함을 유권해석 및 확인*(’21.12월)하였으나,

* 시행령 제85조제6호(금융위가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확인 시 거래 가능)에 따라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협회에 확인서 교부

- 문언상 ‘금융위의 확인’이 개별 거래에 대한 확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업계에서는 여전히 이를 불가한 것으로 인식

나. 개정 내용

-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일반·기관전용을 불문하고 투자대상 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를 이해관계인에서 제외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유권해석 법제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금전을 신탁하는 종합재산신탁에 투자자보호 적용 (안 제104조)

가. 개정이유

-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*이 발의('23.11월)됨에 따라, 이에 걸맞게 투자자보호 규율 사각지대 보완 필요
 - *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(채무, 담보권 등 추가), 전문기관을 활용한 신탁 서비스 제공 허용,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·판매·운용 등 규율 등
- 현재 금전신탁에는 설명의무*·운용규제**가 적용되고 있으나,
 - 같은 금전이라도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간 형평성 문제
 - * 계약체결·변경시 금전운용내용을 설명하고 위탁자가 그 내용을 자필기재
 - ** 투자자가 운용대상에 대해 특정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형 운용의 경우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운용내역을 분기별 제공

나. 개정 내용

- 종합재산신탁에 금전이 편입되는 경우에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·운용규제 적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전 편입에 동일한 투자자보호를 적용하도록 제도간 형평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(안 제109조)

가. 개정 이유

- 금융위-법무부간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함
 - 보험금청구권의 임의 이전·변경이나 법률분쟁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행령으로 신탁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율

나. 개정 내용

- ¹⁾보장대상, ²⁾계약 특성·³⁾구조, ⁴⁾수익자 등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

1) (보장대상) 일정금액 이상*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

→ 재해·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불가**

* 일정기간 이상 지급,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 이상의 보험금 설정

** 재해·질병사망 등의 경우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

2) (계약특성) 보험계약대출 불가

3) (계약구조)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

4) (수익자) 직계존비속·배우자로 제한

※ 상기 요건들과 별개로 「상법」 제733조를 준수하기 위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·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시할 필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보험금청구권의 임의 이전·변경이나 법률분쟁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보험계약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성 제기

라. 입법효과

- 투자·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유족 대신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가 보험금을 신탁받아 유족에게 생활비 등 지급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5. 경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 제한 (안 별표1)

가. 개정 이유

-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 업무*를 경영신탁업자 (은행·증권사·보험사)가 영위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**로 규율중

* 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·아파트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·임대하는 업무

** 「경영신탁사 토지신탁 취급제한」, '15.9월 ~ 현재

【경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제한 필요성】

- ① 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사가 부동산 시행사(개발주체)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금융업 기반의 경영 신탁사(은행·증권 등)의 영위는 부적절
 - * 금융업 기반의 경영 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신탁 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
- ② 토지신탁 영위를 위해 금융업과 상이한 부동산 관련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필요하나, 경영 신탁회사는 인가시 해당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음

⇒ '15.9.7일부터 도입된 동 행정지도가 8차례나 연장됨(~'24.9.6일)에 따라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법제화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신탁업 인가업무 단위*에서 토지신탁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전업 부동산신탁업자만 토지신탁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

* 현행 규정상 수탁 가능한 신탁재산별(종합, 금전, 금전 외, 부동산)로 구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금융행정지도심의위원회('23.9.6) 심의위원들도 “조속한 시일내 제도화”를 촉구

라. 입법효과

- 행정지도 법제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